

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			
	규제사무명	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및 관리	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강화	등록단위	부수적규제	
	성격별분류	사회적규제/투입-환경	유형/구분	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안전행정부	제안부처		
	담당부서		처리기관	중앙/지방자치단체	
	작성자 인적사항	-			
4. 근거법령명 등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소유자·관리자 및 점유자	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	입법예고	없음
	이해관계자	상동	상동	입법예고	없음
	관련부처	안행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	-	부처협의	없음
6. 규제존속기한	- 존속기한 :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- 현행규제내용 ○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여,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- 신설규제내용 ○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(민간)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 <조문내용>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)				
8. 규제체계도					

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1. 규제의 필요성

- '14.2.17. 21:06분경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“경주 마우나 리조트사고 재발방지 대책”(‘14.2.27)에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따라서,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2-1. 규제대안 검토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를 개정하여 민간시설의 안전점검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

2-2.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

- 규제의 비용분석
 -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관리자·소유자 등이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,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

3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3-1. 규제의 적정성

- 경쟁에 미치는 영향

- 모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별도의 경쟁 제한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규제 내용의 적정성

- 시설물의 소유자·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한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동 규제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

3-2. 이해관계자의 협의

- 관계부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
-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

3-3. 규제집행의 실효성

- 규제기준의 선정 및 집행의 실효성

- 법제 27조제1항을 위반 할 경우 1년이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동법 제79조에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

[2] 안전점검 강화

(안행부, 국토부, 방재청)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재난법)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 미부여

*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정기점검·정밀안전진단 의무 등을 부여

- (시특법)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별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나 관련법은 반기 1회 정기적 안전점검만 실시

*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정밀점검과 안전진단(1종)을 실시

□ 개선방안

《 특정관리 대상 시설 : 재난법 》

-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의무화 (법률 개정, '14년말)

-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관리체계 개선

- 특정관리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* (법률 개정, '14년말)

* 교량, 터널, 대형건축물, 아파트 등을 대상, 규모, 용도, 노후도 등을 고려 선정

⇒ 장기적으로 별도의 「(가칭)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 검토

《 1, 2종 시설 : 시특법 》

- 취약시설물(D, E급)에 대해 해빙기·우기·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한 계절별 안전점검으로 제도 개선 (시특법 시행령 개정, '14년말)

- (현재) 반기에 1회 이상 → (변경) 년 3회 이상

* 현재 D,E급의 경우 정기점검(반기 1회이상), 정밀점검(1년에 1회이상), 정밀 안전진단(4년에 1회 이상)을 하여 그 결과 보수·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음

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			
	규제사무명	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·훈련	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신규	등록단위	부수적규제	
	성격별분류	사회적규제/투입-환경	유형/구분	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안전행정부	제안부처		
	담당부서		처리기관	중앙/지방자치단체	
	작성자 인적사항	-			
4. 근거법령명 등	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·관리자	다중이용시설 등	입법예고	없음
	이해관계자	상동	상동	입법예고	없음
	관련부처	안행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	-	부처협의	없음
6. 규제존속기한	- 존속기한 :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- 현행규제내용 ○ 없음				
	- 신설규제내용 ○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을 소유자·관리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 <조문내용>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(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·관리 및 훈련)				
8. 규제체계도					

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1. 규제의 필요성

- 백화점, 선박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불비하여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체계적인 위기대응이 어려운 실정
- 따라서, 민간소유 시설에 대해서도 “위기상황 매뉴얼”을 작성·운영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.

2. 점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2-1. 규제대안 점토

-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바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

2-2.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

- 규제의 비용분석
 -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·운용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의 비용(시설당 약 5백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,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용대비 편익은 크다고 할 수 있음

3.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

3-1. 규제의 적정성

- 경쟁에 미치는 영향

- 모든 민간 소유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별도의 경쟁 제한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규제 내용의 적정성

-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 평소에 주기적으로 훈련하여 대비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동 규제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

3-2. 이해관계자의 협의

- 관계부처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

3-3. 규제집행의 실효성

- 규제기준의 선정 및 집행의 실효성

- 법제 34조의6을 위반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징수토록 동 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의 실효성은 확보되어 있음